



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 [특허]

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,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.

구성요소 [특허]

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성을 정의하는 청구항의 개별요소,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개개의 구체적인 수단 또는 공정을 의미함.

구성요건 [디자인]

지식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, 예를 들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품성(물품에 표현될 것), 형태성(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), 시각성(시각을 통한 것), 심미성(미감을 일으키는 것)을 구비해야 함.

구성되는 [특허]

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 시 연결부(transition) 표현 중의 하나, "구성된"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, 이 연결부 표현이 사용될 경우 특허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 표현을 개방형(close-ended)이라고도 한다.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.

구류 [법일반]

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.

구두증거배제 법칙 [법일반]

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, 그 중에 정하여진 바가 당사자간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내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당사자간의 교섭, 양해, 합의 등이 계약서 작성 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